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1년 12월 10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
(영문명) Shinhan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홈페이지) <http://shbnppam.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타워 18층, 19층
(전 화) 02-767-5777

대 표 이 사 : 최방길

담 당 임 원 : (직 책) 본부장
(성 명) 장덕진 (전 화) 02-767-5720

작 성 자 : (직 책) 팀장
(성 명) 김도훈 (전 화) 02-767-9068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5-8호)

소송 등의 제기·신청

1. 사건의 명칭	2011가합128025 손해배상
2. 원고·신청인	미트브로스 외 2인
3. 청구내용	A-KIF사모부동산투자신탁의 투자자산인 서이천물류센터의 화재사고로 인해 물품 멸실에 따른 손해를 입은 원고 측에서 당사 외 6명의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5,742,028,380원 및 기간 이자, 소송비용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는 등의 판결을 구함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
6. 제기·신청일자	2011.12.02
7. 확인일자	2011.12.0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소송 등의 판결·결정

1. 사건의 명칭	2009가합77933 손해배상
2. 원고·신청인	안성맞춤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3. 판결·결정내용	전액 승소(원고 항소 각하)
4. 판결·결정사유	원고 항소 각하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1. 8. 17
7. 확인일자	2011.12. 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